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교육지원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8
----------	----

제출년월일 : 2022년 11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학령전환기에 있는 만16세(고등학교 1학년 학생)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다양한 아동·청소년에게 문화·진로·여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실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급대상자 관련 조항 수정(안 제3조)

- 1) 발급 대상을 해당 연도에 만 13세, 만 16세가 되는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

다. 협의사항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22. 9. 29. ~ 2022. 10. 19.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첨부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검토의견 반영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구분	검토의견	반영 여부	반영 내용 및 미반영 사유
인권 영향 평가	- 별지서식 ‘아동 청소년 동행 카드 (재)발급 신청서’ 아래쪽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와 학교장 직인을 요구하는 해당란에 만 12세나 14세에 학교 다니는 재학생에 해당 되는 경우만 기재할 수 있게 별도 표시를 해주기 바람. (예: ※ 만 12세, 14세인 중학교 1학년 재학생만 기재하십시오.) - 이유 :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 13세인 학교 밖 학생들의 오인으로 인해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	반영	별지서식 ‘아동 청소년 동행 카드 (재)발급 신청서’ 아래쪽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와 학교장 직인을 요구하는 해당란 비고에 별도 문구 표시(※ 해당 연도에 만 13세, 만16세가 되는 청소년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수정의결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지급 방법 구체화 및 발급시기 확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카드 미발급자에 한정한다”를 “제1호에 따라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중학교 1학년”을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으로, “중인 학생”을 “중인 학생(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3. 해당 연도에 만 16세가 되는 청소년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다만, 제3호에 따라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 중 “포인트”를 “상·하반기 각 5만원의 포인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3. 2.”를 “1. 1.”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1. 15.”를 “1. 1. 30.”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동행카드는 반기별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상반기에 카드를 발급받은 아동이 하반기 신청기간 시작일에 구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하반기 지원금을 지급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앞쪽)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재]발급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	----

발급대상자 (대상아동· 청소년)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주소	
	전화번호	휴대번호
	학교명	학년 / 반

신청내용	신청구분	[] 신규 [] 재발급([] 분실 [] 훼손 [] 그 외)
------	------	--

신청(동의)인 (법정대리인)	성명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번호	
	신청인 구분	[] 법정대리인 [] 대상아동·청소년	
	※ 만14세 미만의 대상아동·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동행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위 학생은 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학교장	직인
비고	※ 해당 연도에 만13세, 만16세가 되는 청소년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재학증명서 첨부 시, 학교장 직인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재학증명서(필요 시) 2. 아동·청소년동행카드(아동·청소년동행카드가 훼손되어 재발급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3.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4.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경우 발급대상자가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 경우 시설 대표자를 본 조례 제6조의 법정대리인으로 준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대상학생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아동·청소년동행카드 발급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발급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재학 학교명, 학년·반
3.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대장 등재 여부 및 구에 체류지를 둔 사항 확인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5.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아동·청소년동행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_____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번호 :

신청인 _____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유의사항

1. 아동·청소년동행카드의 발급은 아동·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대상 아동·청소년이 직접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동행카드는 지정된 사용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발급연도 12월 15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남은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3. 아동·청소년동행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발급대상자 또는 신청인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발급대상자) ① 발급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거나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발급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발급대상자) ①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다만, 카드 미발급자에 한정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 ----- -- 제1호에 따라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신 설>	3. 해당 연도에 만 16세가 되는 청소년
<신 설>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다만, 제3호에 따라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60조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u>중학교 1학년과</u>	5. ----- ----- ----- 중학교 1

상응하는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② (생략)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급대상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10만원을 포인트로 충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발급 시기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신청기간”이라 한다) 동안 제6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할 수 있되 신청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1. 상반기 : 3. 2. ~ 6. 30.
2. 하반기 : 7. 1. ~ 11. 15.

② 구청장은 상반기에 카드를 발급받은 아동이 하반기 신청기간 시작일에 구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하반기 지원금을 지급한다.

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 중인 학생(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 -----

----- 상·하반기 각 5만원의 포인트-----.

제5조(발급 시기 등) ① -----

-----.

1. ----- 1. 1.-----
2. ----- 11. 30.

② 동행카드는 반기별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상반기에 카드를 발급받은 아동이 하반기 신청기간 시작일에 구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하반기 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대상 확대에 필요한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 추계방법
 - 비용추계에는 대상자 주민등록 인구수(2022. 7월 기준)를 반영
- 세출내역
 - 사무관리비(구비) :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홍보물 제작 및 운영관련 물품 구매
 - 민간위탁금(구비) : 동행카드 발급 대상자 지원액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합계
세입							
	소계(a)						
세출	○ 사무관리비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 민간위탁금	622,890	649,260	610,020	592,380	609,120	3,083,670
	소계(b)	628,890	655,260	616,020	598,380	615,120	3,113,670
□ 총 비용(a-b)		628,890	655,260	616,020	598,380	615,120	3,113,67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합계
국비							
시비							
구비	지방세수입	628,890	655,260	616,020	598,380	615,120	3,113,670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628,890	655,260	616,020	598,380	615,120	3,113,670

5. 덧붙이는 의견 : 매년 인구변동으로 인해 비용추계 변동 가능

6. 작성자 : 교육지원과 임근수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년차 예산 628,890천원)

1. 사무관리비 : 6,000천원

가. 리플렛,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비 : 6,000천원

2. 민간위탁금 : 622,890천원

가. 동행카드 발급 대상자 지원액 :

100,000원*6921명*90% = 622,890천원

(만13세 : 3,281명, 만16세 : 3,640명)

※ 비용추계 세부내역

가. 동행카드 발급 대상자(2022. 7월 성북구 주민등록 인구수 기준)

(단위 : 명)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합계
만13세		3,281	3,565	3,482	3,301	3,203	16,832
만16세		3,640	3,649	3,296	3,281	3,565	17,431
합계		6,921	7,214	6,778	6,582	6,768	34,263